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06호
- 나. 제 출 자 : 이인식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 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기금의 조성 및 운용 (안 제4조 ~ 제8조)
- 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(안 제9조)
- 라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(안 제11조 및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 -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: 2023. 9. 6. ~ 2023. 9. 12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 (안 제1조~제3조)
 - 기금의 설치(안 제2조)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함
 - 존속기한(안 제3조) : 2028년 12월 31일까지
- 2) 기금의 조성 및 운용 (안 제4조~제8조)
 -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,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 등을 규정
- 3)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(안 제9조)
- 4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(안 제11조 및 제12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기금의 용도 중 장애인회관 건립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보다 면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제159조(재산의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[시행 2022. 12. 22.] [법률 제18625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